

문서번호	서울장학재단-271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6.5.11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제 호

담 당	부 장	사무국장	이사장
김동규	최준근	대결 최준근	문미란

I·SEOUL·U



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

2016. 5.

서 울 장 학 재 단

이사회 운영 개선 계획

서울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연직이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市-재단 간 소통·협력 체계를 증진하고자 함

I 개요

□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(임원)
- 기관별 설립·운영 조례 및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(내규)
- 공기업담당관-4855('16.5.3,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)

□ 구성현황

- 이사장(비상임) : 문미란 이사장(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시장이 임명)
- 비상임 이사 : 10명(당연직 이사 2명, 시 평생정책교육관 ,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)
- 비상임 감사 : 2명(당연직 이사 1명, 서울시 감사담당관)

□ 운영 실적('13~'15)

구분	개최 횟수	처리안건
2013	3	14
2014	4	16
2015	5	21
계	12	51
연평균	4	17

II 개선 계획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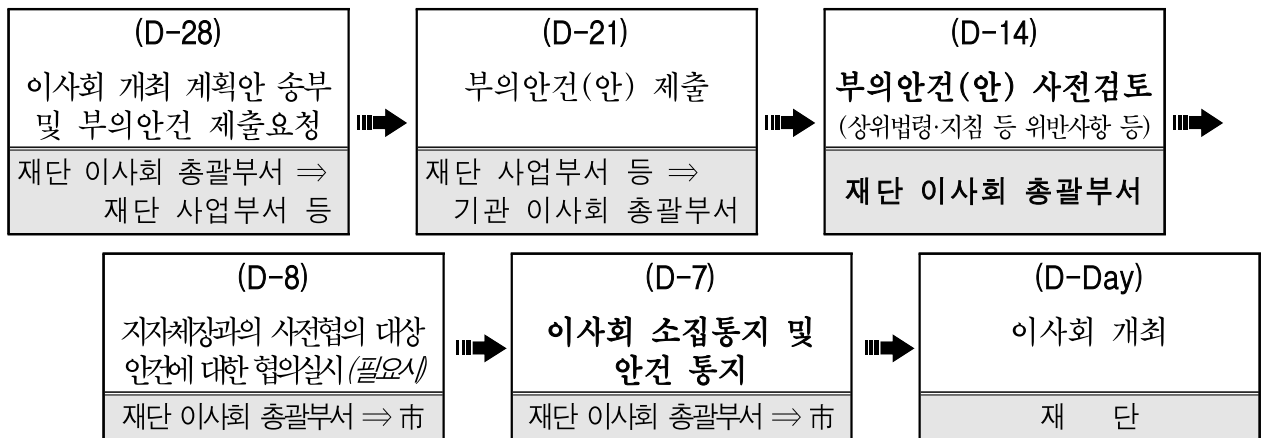
구분	市 개선사항 권고사항 (출자·출연기관 대상)	재단 현재 운영사항	개선방향
이사회 개최 관련	이사회 개최 기준 준수 · 일반안건 : 이사회 개최 7일전 ·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안건 이사회 개최 15일전	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준수 · 일반안건(7일전) · 주요안건(15일전)	현 e-mail 발송 추후 전자 공문 활용
	사후승인 형태의 안건 상정	미준수사항 없음	이사회 승인 전 사전 협의 준수
	법정 협의사항 이행절차 확립	협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 후 안건 상정	현행 유지 기존 규정 준수
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관련	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	이사회 운영계획 미실시	매 회계연도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운영계획 보고 ※'16년 하반기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예정
	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	이사회 개최 결과 홈페이지 공개	이사회 후 14일 이내 재단 홈페이지 공개 및 ※내부 규정 개정
당연직이사 운영 관련	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	당연직이사 참석수당 미지급	재단 내규 개정 후 당연직 이사 수당 지급 ※'16년 하반기는 재단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
	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규정 정비	대리 참석 및 의결권 불가	상위 법령·지침 등에 의거하여 대리 참석 및 의결권 불가
	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(재정기획관) 당연직이사 참여	현재 시 당연직 이사 평생교육정책관(1명)	정관 및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개정 추진 예정('17년 이후)

Ⅲ 세부 추진계획

1 원칙에 의거한 이사회 개최

1-① 사업계획 수립

- 추진목적 :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준수
- 운영기준
 - 일반안건 :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
 -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계획 안 :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송부
- 통보방법 : 전자 공문 송부(이사회 소집 통지서 및 안건 첨부)
- 운영방법



1-② 내부규정 제·개정 절차 준수

- 추진목적 : 내부규정에 근거한 재단 운영을 통한 투명성·신뢰성 확보
- 운영기준 : 규정 제·개정 이전 단체협약,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이사회 승인 전 사전 적용 금지 및 절차 준수
- 운영방법 : 상기 1-① ‘이사회 개최 기준’과 동일 절차 적용

1-③ 법정 협의사항 이행절차 확립

- 관련근거 :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8조
- 추진목적 : 법령에서 규정한 지자체장과의 협의대상 사항에 대한 검토강화로 재단의 조직·기구 및 재정 운용 등의 적정성 확보
- 협의대상 : 직제 및 정원규정, 인사규정, 보수규정, 재산관리규정 등
 - * 상기 규정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체의 규정에 대하여 협의 실시
- 운영방법 : 상기 1-① ‘이사회 개최 기준’과 동일 절차 적용
 - 협의대상 안건에 대한 제·개정 및 폐지 시, 재단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사회 개최 8일 전까지(협의 완료일 기준) 市(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)와 사전협의 실시
 - * 재단의 이사회 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안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 실시
 - *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시(재단⇒市) 재단 내부 검토보고서 첨부
 - * 이사회 개최 8일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안건은 차기 이사회 개최 시 상정

②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

2-①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

- 추진목적 :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·운영을 통한 재단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 및 신뢰성 강화
- 운영기준 :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·확정 후 해당 계획에 근거한 이사회 개최
- 운영방법
 - 매 회계연도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‘○○년도 이사회 운영계획’을 보고안건으로 제출
 -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임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운영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
 - ‘16년 이사회 개최 시 ‘16년 하반기 이사회 운영계획’ 수립 및 보고(‘16년 6월중)

2-② 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

○ 추진목적 : 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를 통한 재단 운영의 투명성·책임성·신뢰성 확보

○ 운영방법

-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
- 작성된 회의록은 이사회 임원의 열람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(내부 규정 등에 따라 위임 가능) 재단 홈페이지 등에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 공개
 - * 공개되는 회의록에 '임원 서명 및 발언자 성명'등은 익명 처리
- 최종 완성된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
- 상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'회의 비공개 결정 의결서' 작성
- 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규정 등 정비('16년 6월)

3] 당연직 이사 운영제도 정비

3-①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

○ 관련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」 ('15.2월, 행자부)
-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○ 추진목적

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통한 市-재단 간 소통·협력 증대
- 재단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

○ 지급대상 :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당연직이사

○ 추진내용

- 지급기준 금액 : 300천원/회
- '이사회 운영규정'상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및 이사회 운영

경비 예산 재조정('16년 6월)

- 재단 회의수당지급 내규 정비

* 본 계획에 의거한 내부규정 정비 후 '16년 하반기는 재단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

3-③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(재정기획관)당연직이사 참여

○ 추진목적

- '지방출자출연법' 등 관련 법령·지침의 적정 적용여부 검토 강화

○ 추진일정

- 정관 및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주무부서(평생교육정책관) 및 주무관청(서울시 교육청)과 협의 후 장기적으로 개정 추진 예정('16년 하반기~'17년)

IV 추진일정

-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 정비 : '16.6월한
- 2016년 하반기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: '16.6월
- 2017년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및 조례개정 추진 : '16.하반기